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432
----------	-----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22일

발의자: 김광성 의원

찬성자: 남진삼, 박춘희, 김성기 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복지·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하여 단체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경비 등 지원 및 정산 절차 명확화(안 제5조, 제6조)
 - 지원 절차 간소화: 지원신청서 제출 및 신청 첨부 서류 삭제
 - 정산 절차 명확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정산 및 첨부서류 추가
- 단체 경비 및 교육 관련 경비 사항 추가(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 (추가) 직무경진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추가)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 특별방범활동기간 중 활동비 지급 신설(안 제4조제3항)
 - 평창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
- 중요재산 관리조항 신설(안 제8조)
 - 단체 관리 중요재산 파악을 위한 사항 추가 및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5. 19. ~ 2025. 5. 21.(3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행정담당관)	사유	의회 의견
제5조제1항 : ① 영 제2조 및 ~	제5조제1항 :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	조문에서 인용하는 상 위법령의 약칭 미사용 에 따른 문구 수정	[수용]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4조를 제9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 · 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평창군 읍 · 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 중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특별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연말연시, 명절(설, 추석), 여름 성수기

나. 특정 범죄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특별방범활동 추진 기간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지원 절차 등)”을 “(지원 등)”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 · 보수비

3. 방범초소 ·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직무 경진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8. 대원의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를 해당 자율방범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7조제4호 중 “자율방범대 등 소속”을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으로, “자율방범대 등에”를 “방범대 및 연합대에”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율방범대 등”을 각각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하고, 같은 항 중 “평창경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율방범대 등”을 “방범대 및 연합대”로, “평창경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중 “자율방범대 등과 모범대원에게”를 “대원과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차량의 경우 10년

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과 변동현황을 년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20○○년도 활동 경비 지원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1. 사업명 :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지원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예) 유류비		
간식비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활동 경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20○○년도 활동 경비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구 분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예) 유류비 간식비 등				

(활동 경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관련)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유류비 등	지출일	2000.00.00 .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 명 :◦ 일 자 : 2020. 00. 00.(0요일)◦ 채 주 :◦ 금 액 : 원◦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20○○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 고
		성명	성별	서명		
00월00 일 (○요일)	00명					

2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6조 관련)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별지 제6호서식] (제8조 관련)

○○자율방범대·연합대 중요재산 현황

등록번호	○○자율방범대 · 연합대-20XX-0		
재산명			
중요재산 사진			
목적(용도)			
재산위치(주소)			
규격 (부동산의 경우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 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자율방범 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p> <p>-----</p> <p>-----</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읍·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평창군 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p> <p>2.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p> <p>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p>

라 한다)이란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 중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특별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연말연시, 명절(설, 추석), 여름 성수기

나. 특정 범죄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특별방범활동 추진 기간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각 읍·면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신 설>

1. 방법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직무 경진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8. 대원의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
육·훈련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읍·면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법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평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생 약)

②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평창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법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방법활동 기간 동안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방법대 및 연합대-----

-----.

③ ----- 방법대 및 연합대-----

경찰서장-----

---.

④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평창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에 경비

④ ----- 방법대 및 연합대-----

경찰서장-----
-----.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를 해당 자율방법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법대 등은 반기별 정산서(별지 2호서식)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자율방법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제7조(지원중단) -----

--.

1. ~ 3. (현행과 같음)
4. ----- 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
----- 방법대
및 연합대에 -----

제8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방법대 및 연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지 제6호서

	<p><u>식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u>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u> <u>2. 차량의 경우 10년</u> <u>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u> <p><u>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과 변동현황을 년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u></p>
<u>제8조(포상)</u>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u>자율방범대</u> 등과 <u>모범대원에게</u> 법 제11조 및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u>제10조(포상)</u> ----- ----- 대원과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 ----- -----.
<u>제9조 (생 략)</u>	<u>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개정안 전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 · 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평창군 읍 · 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 중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특별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연말연시, 명절(설, 추석), 여름 성수기
 - 나. 특정 범죄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특별방범활동 추진 기간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직무 경진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8. 대원의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를 해당 자율방범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차량의 경우 10년

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과 변동현황을 년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 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 ·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 · 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원과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

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檣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체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제3항: 군수는 특별방법활동 기간 동안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대상 · 기준 · 절차 등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김 두 기
연락처	(033) 330 - 2210